

안산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9-310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11. 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지역사회의 평생교육·체육·문화·복지 등의 다양한 활동의 공간제공을 위해 학교시설 유휴공간 활용
-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에서는 시설관리 어려움, 관리자 부재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적극적인 개방이 어려운 상황임
- 이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 적극적인 시설개방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을 활성화시키고자 함

주요내용

- 목적, 용어 정의,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조~제3조)
-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정함(안 제4조)
- 시장이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에 대하여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학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5조)
- 학교시설 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6조)
- 학교시설 이용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7조)
- 학교시설 이용 협조 요청 및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기여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8조)

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
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2】

관련사업계획서 : 【붙임 3】

예산수반사항 : 【붙임 4】 ※ 비용추계서 첨부

-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 - 입법예고 : 2023. 09. 22. ~ 2023. 10. 12. (20일간)
- 기타 참고사항
 - 방침결정문 : 【붙임 5】

【붙임 1】

안산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평생교육·체육·문화·복지 등의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교”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안산시 소재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를 말한다.
2. “학교시설”이란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기숙사 및 급식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,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학교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각급 학교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.

- ② 시장은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학교시설유지보수비 지원사업
2. 학교시설의 관리인력 지원사업
3. CCTV 설치 등 학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
4. 그 밖에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

제5조(협조요청) 시장은 지역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학교 교육 및 안전상 지장이 없고 학교재산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학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이용자 의무 및 책임) ① 학교시설 이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이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, 이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해야 한다.

- ② 이용자는 학교시설 이용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, 이용 후 학교에 시설물 이상 유무 및 청소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.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·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③ 이용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형태 그대로 이용해야 하며, 이용 종료 시 이용 전의 상태(기구 배치 등)로 반환해야 한다.
- ④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 등으로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.
- ⑤ 그 밖에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.

제7조(안전조치) 시장은 학교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제8조(포상) 시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, 단체 또는 학교, 개인에게 「안산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교육청소년재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교육청소년과장 이 세 영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교육지원팀장 이 승 범
	담당자 성명·전화	이 덕 순 (행정 3452)

안산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제9-310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3. 12. 4.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학교시설 이용자 의무 및 책임과 관련하여 안 제6조제1항부터 제4 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학교장이 정하고자 할 경우 시장과 협의하도록 함.

□ 주요골자

- 그 밖에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장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정하도록 수정 (안 제6조제5항)

안산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안

**안산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
같이 수정한다.**

안산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
다.

안 제6조제5항 중 “**학교장**”을 “**시장과 협의하여 학교장**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정안	수정안
제6조(이용자 의무 및 책임) ① ~ ④ (생략) ⑤ 그 밖에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 한 세부사항은 <u>학교장</u> 이 정한다.	제6조(이용자 의무 및 책임) ① ~ ④ (제정안 과 같음) ⑤ ----- ----- <u>시장과 협의하여 학교장</u> ----- .

【붙임 1】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

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피성년후견인

제8조제1호 중 “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항” 을 “지방공무원법 제31조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” 을 “1. 피성년후견인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속		안산시의회
입 안 자	시 의 원	김유숙 의원 대표발의 (행정 3565)

[별지 제1호서식]

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

본인은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OO부 단원으로 최종 임용되기 전 다음과 같은 임용 결격사유가 부존재함을 확인합니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중에 있는 자
5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6.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7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혹은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을 포함한다)
9.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
10. 징계로 해당 체육단체에서 영구제명을 받은 자
11.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“학교폭력”을 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자 (선수 및 지도자에 한함)로서 그 폭력의 심각성, 지속성,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

이상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며, 만일 고의 또는 과실로 임용 결격사유가 있음이 추후 확인될 경우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및 민·형사상 책임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 . . .

서 약 자 : (서명 또는 날인)

안 산 시 장 귀하

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단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단원이 될 수 없다.</p> <p>1. <u>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</u></p> <p>2. ~ 11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7조(단원의 결격사유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<u>피성년후견인</u></p> <p>2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해임)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.</p> <p>1. <u>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</u></p> <p>2. ~ 6. (생 략)</p>	<p>제8조(해임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<u>지방공무원법 제31조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2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<p>별지 제1호서식</p>	<p>별지 제1호서식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</p> <p>본인은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00분 단원으로 최종 입증되기 전 다음과 같은 입증 결격사유가 부존재함을 확인합니다.</p> <p>1. <u>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</u></p> <p>2. 그리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난자</p> <p>3. 그리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재판유예 기간이 지난 날부터 2년이 지난자</p> <p>4. 그리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과와 그 선고유예 기간에 등록 있는 자</p> <p>5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의 판단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경지된 자</p> <p>6. 세금반란에 대한 징수와 관련하여 「징벌·제재법」 및 「제36조에 규정된 괴물 범위에서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난자</p> <p>7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괴물을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난자</p> <p>8. 미성년자여서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혹은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서그레이드」에 따른 아동·청소년학년 성범죄를 저질러 미연 처벌되거나 형 또는 카드값으로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카드값으로 확인된 자 (점령수색을 선고받은 후 그 점령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들을 포함한다)</p> <p>9. 경계로 파도 또는 치밀 바운을 받은 자</p> <p>10. 경계로 치밀 세속단체에서 영구적영장을 받은 자</p> <p>11. 「학교폭력방지 및 대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「학교폭력」을 친위를 하였거나 기갈치웠던 자 (선수 및 지도자와 함께)</p> <p>이상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여, 만일 그의 드는 과실로 입증 결격사유가 있음이 증명될 경우 모든 책임을 본인이지고 계약해지 및 민행사상 책임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</p> <p>서 약 자 : (서명 또는 날인)</p> <p>안 산 시 장 귀하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</p> <p>본인은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00분 단원으로 최종 입증되기 전 다음과 같은 입증 결격사유가 부존재함을 확인합니다.</p> <p>1. <u>피성년후견인</u></p> <p>2. 그리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난자</p> <p>3. 그리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재판유예 기간이 지난 날부터 2년이 지난자</p> <p>4. 그리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과와 그 선고유예 기간에 등록 있는 자</p> <p>5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의 판단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경지된 자</p> <p>6. 세금반란에 대한 징수와 관련하여 「징벌·제재법」 및 「제36조에 규정된 괴물 범위에서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이 지난자</p> <p>7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, 「서그레이드」에 규정된 괴물을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이 지난자</p> <p>8. 미성년자여서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, 「제36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혹은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서그레이드」에 따른 아동·청소년학년 성범죄를 저질러 미연 처벌되거나 형 또는 카드값으로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카드값으로 확인된 자 (점령수색을 선고받은 후 그 점령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들을 포함한다)</p> <p>9. 경계로 파도 또는 치밀 바운을 받은 자</p> <p>10. 경계로 치밀 세속단체에서 영구적영장을 받은 자</p> <p>11. 「학교폭력방지 및 대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「학교폭력」을 친위를 하였거나 기갈치웠던 자 (선수 및 지도자와 함께)</p> <p>이상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여, 만일 그의 드는 과실로 입증 결격사유가 있음이 추후 확인될 경우 모든 책임을 본인이지고 계약해지 및 민행사상 책임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</p> <p>서 약 자 : (서명 또는 날인)</p> <p>안 산 시 장 귀하</p>